

대구양궁클럽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대구 양궁클럽”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두므로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로 본회의 발전에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 3 조 (임 원)

1.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의장이 된다.

………총 무 :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제반 관리를 담당한다.

………시설관리 : 회장을 보좌하고 양궁장 시설 관리를 담당한다.

………고 문 : 회장, 부회장의 권한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동호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한다.

………웹마스터 : 공식카페, SNS를 통해 홍보 및 관리담당한다.

2. 임원으로 선출된 회원은 본회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모든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회원 증가 시 임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 (회원자격)

1.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초/중/고등학교 양궁부 소속 학생일 경우 운영진 회의 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2. 정회원, 준회원, 신입회원 제도를 둔다.

제 5 조 (신입회원과 준회원의 자격)

1. 신입회원 : 본회의 공식 카페를 가입한 자

2. 준 회원 : 운영진과 면담 과정을 거치고, 월회비를 납입한 자

제 6 조 (정회원 승격)

1. 가입 후 회비 납기일 기준 3개월 뒤 자격심사 과정을 거친 후 정회원으로 승격한다.

2. 준회원 3개월의 기간은 월회비가 연속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3. 개인 양궁장비를 갖춘다.

4. 준회원 기간 내 본 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정회원 자격을 무기한 기각한다.

제4장 [회 의]

제 7 조 (총 회) 총회는 연 1회 본 회의 임원진의 결정으로 매년 10월 말에 개최하고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폐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 승인

4. 총회는 본 회의 평상 운영과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5. 회의 참가 자격은 정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한하며, 준회원은 의사결정권이 없다.

제5장 [재 정]

제 8 조 (회 비)

1. 회비는 월 20,000원이며, 월납으로 하되, 1년 선납 시 200,000원으로 한다.
2. 본 회의 기금은 일체 개인에게 대여하지 않는다.

제 9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6장 [공통수칙]

제 10 조 (기본수칙)

1. 양궁장에서는 반드시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2. 관리자 부재 상태에서 실사훈련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책임자를 정해 통제하에 실시한다.
3. 습사 장내 사대 기준으로 통제라인을 지키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시한다.
4. 실내 습사시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철저한 주위 확인 후 실시한다.
5. 연습 시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에도 절대로 사선 앞쪽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6. 실사 중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관리자의 지도에 따른다.
7. 장비를 조립할 때 옆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
8. 훈련 전 장비 상태를 필히 확인한다.
 - 1) 화살 노크, 포인트, 인서트 결합 유무
 - 2) 화살 변형 상태 확인 (밴딩 테스트)
 - 3) 오프 회원과 운영진으로부터 장비 최종 확인 후 습사
9. 빈활은 당기지 않는다.
10. 훈련 중 옆 사람과 잡담을 해서는 안 된다.
11. 습사장 외에서 화살을 장전하고 슈팅 자세를 취하거나 활과 장비를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된다.
12. 타 선수가 실사 중일 때 화살을 회수하려 가면 안 된다. 회수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한다.

제 11 조 (양궁장 이용수칙)

1. 양궁장 이용은 운영진과 사전 협의한다.
2. 복장 규정을 준수한다. (슬리퍼, 구두, 민소매, 나시, 셔츠 등 착용을 금함)
3. 비회원 동반 방문 시 운영진과 사전 소통한다. (비회원은 활쏘기 등 무단행동을 금한다.)
4. 활 이외의 용품 반입을 금한다. (석궁, 장난감 총기류, 낚시대, 골프채 등 개인물품)
5. 타 회원 장비는 손대지 않는다.
6. 수렵은 불법이므로 생물체에 사격을 금지한다.

제 12 조 (준회원 이용수칙) 준회원은 파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수칙을 따르며 단독행동을 금한다.

1. 거리 습사 금지, 연습용 단거리만 이용할 수 있다. (운영진 협의 후 변경 가능)
2. 평일 습사 및 야간 습사 금지한다.
3. 정회원 승급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역량에 따라 양궁장 이용을 제한한다.
4. 위 제한 사항은 반드시 운영진과의 협의를 통해 실행한다. (타 정회원간 협의는 금한다.)

제 13 조 (장비관련 유의사항)

1. 본 회와 관련된 판매업체는 없으며 장비 구매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
2. 상담 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장비의 책임 또한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
3. 클럽 회원간 중고 물품 구매 및 공동구매는 클럽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 부 칙

1.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 수칙을 위반한 경우 임원진의 의결과정을 통해 경고하거나 제명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가능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상황에 따라 상시표결로 회칙이 수정될 수 있다.)